
Advance unedited version

Distr.: General
3 November 2023

Original: English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1. 위원회는 2023년 10월 19일과 20일에 개최된 제4054차 및 제4055차 회의¹에서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²를 심의하였으며, 10월 30일(월)에 개최된 제4068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론

2. 위원회는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 제출과 그 안에 담긴 정보에 대해 환영한다. 위원회는 규약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보고기간 동안 취한 조치들에 대해 당사국 대표단과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대화 중 대표단이 제공한 구두 답변과 서면 보충 정보에 대해 당사국에 감사한다.

B. 긍정적인 측면

3. 위원회는 규약에 따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입법, 정책 및 제도적 조치를 보고 기간 동안 당사국이 시행한 것을 환영한다:

- (a) 2021년 4월에 채택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b) 2019년 12월 27일 채택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c) 2018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4.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국제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 (a)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2023년 1월;
- (b)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 CRPD), 2022년 12월;
- (c) ILO 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 2021년 4월, 모두 2022년 4월 20일에 국내 발효.

¹ CCPR/C/SR.4054 and CCPR/C/SR.4055 참조.

² CCPR/C/KOR/5.

* 위원회의 제139차 세션에서 채택(2023년 10월 9일-11월3일)

C.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선택의정서에 따른 견해(개인진정 결정)(제2조)

5.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직도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수의 개인진정 결정이 채택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을 포함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 포함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당사국의 언급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위원회의 견해(개인진정 결정)³로 인해 무효화 될 수 없다는 당사국의 발언과, 사법부가 당사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내용 및 해석에 대해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6. 당사국은,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법원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개인진정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권고들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위원회가 어떠한 배상을 승인한 개인통보 진정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그러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국은 판사, 검사,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규약에 대한 구체적인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권고와 개인진정 결정의 이행을 감시할 국가적 체계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제2조)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당사국의 언급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법안이 아직 위원 선정 및 임명을 위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완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8. 당사국은 후보자 추천을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의 설치를 포함하여 위원 선정 및 임명을 위한 완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9. 위원회는 구속력 없는 2021년 법무부의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발간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소재 기업을 포함한,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기업들의, 생명권과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한, 규약 위반 혐의에 대한 계속된 보고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제도의 부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침해의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효과적 구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제, 특히 사법적 구제에 대하여 받은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6조, 제8조).

10. 위원회의 이전 권고들⁴을 유념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관할권 내 모든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를 포함하여, 인권기준을 존중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제도들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 (b) 관련 정보 공시 제도를 포함한, 기업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구속력 있는 법의 제정을 고려한다;
- (c) 관할권 내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범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독립적 메커니즘의 설치를 고려한다;
- (d)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한, 관할권 내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

차별 금지, 혐오 표현 및 증오 범죄

11. 위원회는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이 당사국에 부재한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³ CCPR/CKOR/5, para. 5.

⁴ CCPR/C/KOR/CO/4, para. 11.

위원회는 또한 북한이탈주민, 무슬림 이주민, 난민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치인과 공인들을 포함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주민, 난민 신청자, 난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하고 있다(제2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12.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모든 삶의 영역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직접적, 간접적, 교차적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며 차별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한다;
- (b) 인권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증진하고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고정관념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 (c) 증오 범죄 신고를 장려하고 그러한 범죄가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조사되고, 가해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적절한 제재를 받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d) 중앙 및 지방 당국, 법 집행 공무원, 판사, 검사에게 혐오 발언 및 증오 범죄 대응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미디어 종사자에게 다양성 수용을 촉진하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13.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 성소수자(LGBTI)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차별, 혐오 발언 및 폭력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과 정책이 부재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2022년 4월 대법원이 군 영외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군인 2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가 계속 범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인정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같은 분야에서 동성 커플과 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법률이 부재하고, "성전환증" 진단, 생식능력제거, 수술 등의 요건이 포함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계속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7조, 제17조 및 제26조).

14.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률과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b)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
- (c) 민법 개정 또는 시민 결합 도입 등 동성 커플과 그 자녀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 (d) '성전환증' 진단, 생식능력제거 및 외부성기 성형수술, 혼인 여부와 관련된 조건 등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성전환에 대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 (e)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 및 다양한 성 정체성에 관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f)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 캠페인을 개발 및 시행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성 평등 및 여성에 대한 차별

15. 위원회는 공공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 증대를 위한 목표 채택을 포함하여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다양한 조치에 주목하면서, 고위 의사 결정 직위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 부문과 정치 생활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 부문에서 설정된 낮은 수준의 목표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악화되는 민간 부문의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당사국의 역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제2조, 제3조, 제25조 및 제26조).

16. 당사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공공 부문 고용에서 여성 대표성에 대한 보다 야심 찬 목표를 채택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의사 결정 직책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b)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성별 분리 임금 분포 의무 공개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c)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d)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의 여성 후보자 할당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하고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할당제 확대를 고려하는 등 선출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이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역량이 축소되거나 진전이 후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정 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

17. 위원회는 가정폭력 및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이 시행한 광범위한 조치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온라인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 지속적으로 만연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낮은 젠더 기반 폭력 신고율, 낮은 가해자 기소 및 유죄 판결률, 관대한 제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강간의 법적 정의가 동의의 부재가 아닌 '폭력 또는 협박'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부 강간이 특정 처벌 가능한 범죄로 명시적으로 범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26조).

18.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⁵를 반영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 (a)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여성 폭력 사건이 신고되고 철저하게 조사되며, 가해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적절한 제재로 처벌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 (b)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책과 보호 수단, 법률적, 의료적, 재정적, 심리적 지원, 특히 숙소나 쉼터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 (c) 모든 상황에서 부부 강간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이 아닌 동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정의해야 한다;
- (d) 사법체계에 도움을 구하는 여성에 대한 보복이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 피해자의 요청을 포함하여 범죄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와, 플랫폼에서 범죄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및 배포자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등 온라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자발적 임신중지 및 성과 재생산 권리

19. 위원회는 안전한 자발적 임신중지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4월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토가 지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6조, 제7조 및 제8조).

20.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6호(2018)의 제8항을 염두에 두고, 당사국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적절한 법률의 제정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자발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지체 없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에 의료용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을 도입하고, 임신중지, 피임, 임신중지 치료 및 기타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대테러 대책

21. 위원회는 대테러 활동을 규율하는 법 체계가 특히 테러위험인물의 통신 감청에 대한 법적 승인과 관련하여 규약에 보장된 권리의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국가정보원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 및 제9조 제4항에 따라 대테러대책위원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테러 조사 및 추적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것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동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22. 당사국은 대테러 법률이 적절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적시의 사법적 감독과 검토를 포함하여 대테러 조사 및 추적의 맥락에서 법 집행기관과 보안 기관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⁵ CEDAW/C/KOR/CO/8, paras. 22-23.

사형제

23. 위원회는 1997년 이후 당사국이 준수하고 있는 사형 적용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를 인정하면서 법원이 계속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사형을 선고 받은 상태로 있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인식 제고 조치를 포함하여 사형제 폐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가 명백히 부족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6조).

24. 생명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6호(2018)에 비추어 볼 때,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법률상 사형을 폐지하고 모든 사형수를 징역형으로 감형해야 한다;
- (b)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 (c) 사형제 폐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고취하기 위해 적절한 인식 제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d) 사형 선고를 받은 개인이 새로운 DNA 증거를 포함하여 새로 발견된 증거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재심사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자살 예방

25. 위원회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를 인정하지만 각 노인, 청소년 및 군대 내의 자살률을 포함하여 자살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자살 예방 센터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 차원의 자원 부족으로 인해 당사국의 접근 방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포함하여 군대 내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들을 환영하지만, 많은 수의 군인이 복무 과정에서 받는 높은 수준의 압박과 관련된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제2조 및 제6조).

26. 생명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6호(2018)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교육, 노동 및 군대 환경에서의 매우 높은 수준의 압박을 포함하고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과 관련하여 자살의 사회적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재원을 늘리고 지역 차원의 자살 예방 전담 센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

생명권 - 이태원 참사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인파운집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 참사로 인하여 159명이 사망하였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 위원회는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들이 추모집회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고, 그와 같은 추모집회에 참여하는 인권 활동가들을 조사하는 등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노력을 방해하였다는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제2조 및 제6조).

28. 당사국은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6호(2018)를 염두하여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하고;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보장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를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

29.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와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⁶를 상기하며, 당사국의 법률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특히 정신적 고문을 완전히 범죄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 가능한 형벌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고문과 가혹행위 혐의를 조사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인권 조사 기구로서 고문 및 가혹행위 조사를 일부 검토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7조).

⁶ CAT/C/KOR/CO/3-5, para. 7

30.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형법에 포함된 고문의 정의가 규약 제7조 및 고문 금지에 대한 기타 국제 규범을 완전히 준수하고,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 (b) 고문 및 가혹행위가 의심되는 모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형벌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의료 및 심리적 보상을 포함한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c) 국제 기준에 맞추어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d) 민간에 의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포함한 모든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 (e) 자유 박탈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조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 고문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f)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군대 내 인권 침해

31.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적인 군 인권 보호관을 신설하고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를 축소하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등 군대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전히 군대 내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제6조 및 제7조).

32. 당사국은 군대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절한 제재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과 법률, 의료, 재정 및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군대 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군대 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신매매, 노예제, 그리고 예속의 근절

33. 위원회는 2021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정 및 2023년 3월 인신매매방지종합계획(2023-2027) 등, 당사국이 인신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그리고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노동착취 및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가 당사국에 여전히 만연하고, 피해자 식별은 미흡하며, 특히나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에 의한 신분증 압수 등의 관행으로 인하여 노동착취와 강제노동에 처해진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들과 법상 처벌에 관련된 조항들이 유엔 국제범죄조직 방지협약 부속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있어 공백을 야기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

- (a) 적절한 처벌조항 추가와 포괄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인신매매 정의 개정 등, 형법과 인신매매방지법이 인신매매 관련 국제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b) 모든 인신매매 사건들이 면밀히 수사되고, 기소된 가해자들이 적절하고 억제력이 있는 처벌을 받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 (c) 노동착취 피해자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 보호, 그리고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d) 이주노동자의 여권과 신분증을 압수하는 고용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5. 위원회는 현행 「형사소송법」 및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이 변호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제9조 및 제14조).

36.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5호(2014)를 고려하고, 규약 제9조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구금자가 심문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 및 처우

37.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거부당한 북한이탈주민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송환에 대해 집행정지효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당사국의 보장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2019년 11월의 경우처럼 보호 불허 처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도착 즉시 구금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조항을 통해 최대 90일을 초과하여 구금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38.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국제적 보호를 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개인이 규약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위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거나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 (b) 심문 및 구금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정 구금의 기간 및 그에 대한 사법 심사, 강제되거나 또는 보호 거부 결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에 대해 사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절차와 안전장치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그러한 안전장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c)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동안 구금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

39. 위원회는 보고 기간 중 시행된 일부 법 개정을 환영하지만,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사람이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할 경우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퇴원이 거부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한 사람으로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입원적합성심사의 결과로 의료시설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대부분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에 필수적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가 환자와의 대면 면담 없이 서면 자료에 의존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제7조 및 제9조).

40. 당사국은 자유의 박탈이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적용되어야 하며 사법적 심사를 포함한 법률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적 및 실체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법적 후견에 기반한 제도를 폐지하고 당사자의 견해를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 의사 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위원회에 필요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자유의 박탈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연장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조와 절차의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

구금조건

41. 위원회는 구금의 조건과 관련하여 그간 취해진 특정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구금 조건이 여전히 규약 제10조 및 유엔 수형자 처우에 관한 표준 최소규칙('만델라 규칙')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023년에 구금 시설의 전체 수용률이 수용 인원의 108%까지 감소했지만, 과밀 수용, 특히 공용공간과 독방과 병동의 수감자 1인당 공간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기간의 독방 구금을 포함하여 독방구금이 처벌로서 계속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권과 수사 구금실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을 감독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우려를 표명한다(제10조).

42. 당사국은 구금 조건이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 표준 최소규칙('만델라 규칙') 및 여성 수감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에 대한 비구금 조치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 규칙')을 포함한 관련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비구금 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구금 시설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등 과밀 수용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수감자당 최소 생활 공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b) 처벌 수단으로 독방구금 활용을 줄이고, 법정 최대 독방 구금 기간을 '만델라 규칙'에 부합하도록 하며, 연속적인 독방구금을 금지해야 한다.
- (c)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 기관에 자격을 갖춘 의료진의 수와 관련 예산을 늘리고 구금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d) 수사 구금실에서 여성이 남성 직원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주 구금 환경

43. 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와 사실상 구금 시설에 해당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 등 출입국항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와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항에서 독립적 주체에 의한 정기적 심사가 부재한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구금시설에서 아동이 구금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제7조, 제10조 및 제24조).

44.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외국인보호소와 사실상 구금 시설로 운용되는 출입국항 내 환경이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b) 신체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5호(2014)에 따라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 기간을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주민, 난민 및 난민신청자

45.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행정 구금에 대한 구조적인 의존과 체류자격이 없는 난민 신청자가 빈번하게 구금된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금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이주 구금에 대한 자동적인 사법 심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관련 법 조항이 불회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에 회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고려되는 경우에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지위 심사절차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점(‘불회부결정’)에 대해 우려하며, 이러한 관행이 강제송환금지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취업 허가, 의료 및 기초 생활 지원에 대한 접근권, 인도적 체류자는 가족 재결합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조항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제2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46.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이주 구금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b)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특히 구금 기간에 대한 엄격한 상한선을 도입하고 구금 명령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자의적인 이주 구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c)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 (d) 인도적 체류자에게 가족 재결합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 (e)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취업 허가,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초 생활 지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법률과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
- (f) 국경 관리 공무원과 출입국 관리 직원이 규약 및 기타 적용가능한 국제 기준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47. 위원회는 사법부 및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보다 광범위하게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임명된 판사들에게 사법권이 집중되어 부정부패 수사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 2명의 판사만이 징계 조치에 그쳤으며, 8명의 판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제2조 및 제14조).

48. 당사국은 사법부와 검찰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고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판사와 검사의 선발, 임명, 정직, 전보, 해임 및 징계 절차가 규약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 관련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법권 남용이 효과적으로 조사, 기소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 제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인 통신의 모니터링, 감시 및 감청

49. 위원회는 특히 보안 및 법 집행 기관에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입자 정보에 접근하고, 법원 명령 없이 통신을 감청하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국의 법률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긴급 감시 및 감청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2022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주목하지만, 이 요건이 사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제17조, 제19조 및 제21조).

50.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온라인 감시, 통신 및 통신 데이터(메타데이터) 감청, 데이터 검색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감시 활동과 사생활 간섭이 규약, 특히 제17조의 합법성, 비례성 및 필요성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적절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국가 관행이 이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b) 감시 및 감청이 사전 사법적 승인과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한다;
- (c)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은 당사자에게 감시 및 감청 활동에 대해 통지하고 남용이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

51. 위원회는 2019년 12월 2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복무(18~21개월)에 비해 차별적이고 징벌적이라는 점과 대체복무가 교정시설에서의 복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대체복무 거부자들(현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중이다)과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석방되고 전과기록이 말소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이전 권고들⁷ 및 개인진정 결정들⁸과 달리 이들에게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제17조, 제18조).

52. 당사국은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로 대체복무를 확대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없애야 한다. 또한 현역 군인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이전 권고들과 개인진정 결정들에 합치하도록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출소하여 범죄 기록이 말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53. 위원회는 이전 권고들⁹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법 조항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언론인이 형사 기소를 당하고,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전 권고들¹⁰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의 지나치게 모호한 문구에 따라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제9조, 제15조 및 제19조).

54.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20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역형은 결코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모든 경우에 형사법은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형사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여 자유권규약 제15조에 따른 법적 확실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⁷ CCPR/C/KOR/CO/4, para.45.

⁸ Jong-nam Kim et al. v. Republic of Korea (CCPR/C/106/D/1786/2008); Young-kwan Kim et al. v. Republic of Korea (CCPR/C/112/D/2179/2012); Jong-bum Bae et al. v. Republic of Korea

⁹ CCPR/C/KOR/CO/4, para. 47

¹⁰ CCPR/C/KOR/CO/4, para. 49

평화적 집회의 권리

55. 위원회는 상당수의 집회를,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한 것이 비례성 및 필요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시위대를 막고 연행하기 위하여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하고, 시위 주최자들과 참가자들에 대하여 형사법을 적용하여 체포,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서울 지하철에서 진행한 시위들에 대하여 경찰의 고압적인 진압이 있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의 비례성, 필요성 및 위축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당국의 균열(disruption)에 대한 낮은 관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21조).

56.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제37호(2020)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동 권리에 대한 제한은 규약 제21조와 비례성 및 필요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염두하여 당사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의 폐지 또는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법 집행관이 특히 시위의 맥락에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

57. 위원회는 해고노동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에 관한 일정한 제약을 제거한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모든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dependent contractors)”,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고용 형태 속 노동자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규약 제22조 관련 유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수 차례의 압수수색, 고액의 과징금, 조합원에 대한 소환조사, 구속 및 징역형 등 사법적 탄압과 낙인찍기를 포함하여 2022년부터 벌어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탄압에 관한 보고에 우려한다(제22조).

58. 당사국은 모든 개인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본 규약 제22조 제2항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 (a) 공무원, 교사, 비전형 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은 본 규약 제22조에 엄격하게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 (b)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c) 본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59. 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라는 모호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60. 당사국은 공무원과 교사가 시민으로서 본 규약 제25조에 보장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및 여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출생등록

61.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¹¹를 상기하며, 난민, 난민 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무국적자 및 미등록 이주인이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사관에 의해 등록이 거부되거나 극복할 수 없는 행정적 걸림돌에 직면하는 경우 등이 있다는 점을 주지하며, 외국인이 여전히 자녀의 출생 등록을 본국 대사관에 해야 한다는 것을

¹¹ CCPR/C/KOR/CO/4, paras 56-57

우려한다(제24조).

62. 당사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히 제정하고, 모든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를 채택해야 하며, 출생등록을 통해 얻은 정보가 오직 외국인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D. 배포 및 후속 조치

63. 당사국은 사법, 입법 및 행정 당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일반 대중에게 규약에 명시된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규약, 두 개의 선택의정서, 제5차 정기보고서 및 본 최종견해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당사국은 정기 보고서와 본 최종견해가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도록 해야 한다.

64. 위원회 절차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은 2026년 11월 3일까지 위 제12항(차별금지,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 제56항(평화적 집회의 권리) 및 제58항(결사의 자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5. 위원회의 예측 가능한 검토주기에 따라, 당사국은 보고서 제출에 앞서 2029년에 위원회의 쟁점 목록을 받게 되며, 제6차 정기보고서를 구성하는 답변서를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보고서 작성 시 당사국이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와 폭넓게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 총회 결의 68/268에 따라 보고서의 글자 수는 21,200 단어로 제한된다. 당사국과의 다음 건설적인 대화는 2031년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